

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심의주문

“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”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산림보호법 개정 시행(2012. 08. 23)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·관리하기 위하여 고령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(제1조 및 제2조)
- 위원회의 개최방법 및 위원의 임무(제3조 및 제4조)
- 회의 진행방법 및 의견청취, 회의록 작성(제5조, 제6조 및 제7조)
- 현지조사와 서면심의, 간사의 임무(제8조, 제9조 및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
- 관계법령 :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32조의7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조례(안) 붙임

5. 입법예고 결과

- 입법예고 기간 : 2013. 3. 15 ~ 2013. 4. 5 (22일간)
- 입법예고 방법 : 고령군 홈페이지(군보 제886호) 및 읍면게시판
- 제출의견 : 없음

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에 따라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군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2.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(사방사업)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
4.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·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고령군 지역주민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,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9조(회의의 진행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
 2.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
 3.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(이하 "관계인"이라 한다),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11조(상정안건 심의)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.

1.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"원안 의결"로 한다.
2.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"조건부 의결"로 한다.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

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3.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"심의보류" 로 한다.

4.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"부결"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록 등)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심사사항
3. 회의진행 상황
4. 위원 발언요지
5. 심의결과
6.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현지조사)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서면심의)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간사)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고령군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, 상정안건의 설명,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6조(서식)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등은 별지서식에 의한다.

제17조(위원회의 수당 등)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2013. . . 조례 제 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심 의 번 호	제 2000 - 0호
심 의 년 월 일	2000. 00. 00. 제0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

의
결
사
항

제 목 :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
(고령군 00(읍·면) 00리 00번지)

제 출 자	고령군수
제 출 년 월 일	20 . 00. 00.

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

1. 대상지 개요

- 소재지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(지목 :)
- 지정면적 : m²
- 피해유형 : 산사태, 토석류로 구분 작성
- 위험등급 : I, II, III, IV등급으로 구분 작성
- 피해우려 내용 : 인명, 가옥, 농경지 등

2. 의결 주문

3. 검토 내용(예시)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

-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
 - 산지의 지형, 지질적 특성, 주변 환경,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,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(토지소유자 및 관계인)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

-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

- 현장 점검계획,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, 위험경보별 전달체계, 대피장소,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

-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,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

-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,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

기타 사항

4. 실무 검토의견(종합의견)

-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

5. 참고사항 :

- 붙임** : 1. 취약지역 판정표(산사태, 토석류), 위치도 및 사진 1부.
2. 지역주민의 의견,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
3.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(필요시) 1부.

<붙임 1-1>

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						
일 반 정 보	조 사 자	소속		직 성명		연락처
	조사일자		년 월 일			
	위 치	행정구역	경상북도 고령군 읍·면 리	번지(속칭:)		
		GPS좌표	위도(° ' "), 경도(° ' ")			
	○유역면적		ha			
인 자	Category 별 점수					
	1	2	3	4	5	점수
보호대상	일반산지	재산피해	인가1~5미만	인가5~10	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	
점 수	0	100	200	220	240	
경사길이 (m)	50이하	51-100	101-200	201이상		
	0	19	36	74		
모 암	퇴적암 (이암, 혈암, 석회암 사암등)	화성암 (화강암류 기타)	변성암 (천매암, 점판암 기타)	변성암 (편마암류 및 편암류)	화성암 (반암류와 안산암류)	
점 수	0	5	12	19	56	
경사위치	0-4/10	5-6/10	7-10/10			
점 수	0	9	26			
임 상	· 침엽수림 (치수림, 소경목) · 무입목지	· 침엽수림 (중경목, 대경목) · 활엽수림, 혼효림(치수림)	· 활엽수림, 혼효림 (소, 중, 대경목)			
점 수	18	26	0			
사면형	상승사면	평형사면	하강사면	복합사면		
	0	5	12	23		
토심(cm)	20이하	20-100	101이상			
점 수	0	7	21			
경사도(°)	25이하	26-40	41이상			
점 수	16	9	0			
조사자의 점수보정	※ 보정인자 1.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(+10) 2.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(-10) 3. 송전철탄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(+20) 4. 과수원 및 초지단지,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(+20) 5.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(+10)					
점수계						점
종합의견						
관리방안	산지사방()ha			대피장소		

<붙임 1-2>

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							
일 반 정 보	조 사 자	소 속		직		연락처	
				성명			
	조사일자		년 월 일				
	위 치	행정구역	경상북도 고령군	읍·면	리	번지(속칭:)	
	GPS좌표	위도(° ' "), 경도(° ' ")					
	○유역면적		ha				
인 자	Category 별 점수						
	1	2	3	4	5	점 수	
보호대상	일반산지	재산피해	인가1~5미만	인가5~10	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		
점 수	0	150	300	330	360		
황폐 발생원	산사태 위험지 3,4등급만 있는 유역	산사태 위험지 2등급50% 이하인 유역	산사태 위험지 2등급50% 이상인 유역	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			
점 수	0	80	96	112			
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(%)	10% 미만	10~20	20~30	30이상			
점 수	0	10	40	18			
계류 상부 경사(°)	9 미만	9~13	14~18	19이상			
점 수	0	10	28	54			
총 계류 길이(m)	200 미만	200~500	500이상				
점 수	0	28	74				
계류평균 경사(°)	5 미만	5~7	8~10	11~16	16 이상		
점 수	0	16	32	48	60		
조사자의 점수보정	※ 보정인자 1.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(+10) 2.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(-10) 3. 송전철탐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(+20) 4. 파수원 및 초지단지,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(+20) 5.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(+10)						
점수계	점						
종합의견							
관리방안	사방댐()개소, 계류보전()km			대피장소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

1. 심의 번호 :

2. 심의 대상지

(1) 소재지 :

(2) 지정 면적 :

(3) 피해 유형 :

(4) 위험 등급 :

(5) 피해 내용 :

3. 심의 결과

심의 항목	심의결과		
	적정	보완	부적정
(1)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			
(2)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(토지소유자 및 관계인)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			
(3)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			
(4)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적정성			
(5)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			

4. 심의위원 의견

심 의 번 호	제 2000 - 0호
심 의 년 월 일	2000. 00. 00. 제0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

보
고
사
항

'00년 제0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

제 출 자	고령군수
제 출 년 월 일	20 . 00. 00.

제○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

1. 회의 개요

개최일시 : 20 . ○○. ○○() 00:00~00:00

장 소 :

참석인원 : ○명

* 참석위원 명단 작성

심의안건 : ○건

○ 제20 -○호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제20 -○호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제20 -○호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제20 -○호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제20 -○호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심의 결과

○ 원안의결 : 제20 - ○호, ○호

○ 심의부결 : 제20 - ○호, ○호

○ 심의보류 : 제20 - ○호

2. 세부 심의결과

안건번호 : 제20 -○호

○ 안 건 명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심의결과 : 원안 의결

안건번호 : 제20 -○호

○ 안 건 명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□ 안전번호 : 제20 -○호

○ 안전명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심사결과 : 원안 부결

-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

□ 안전번호 : 제20 -○호

○ 안전명 : 고령군 ○○(읍·면) ○○리 ○○번지

○ 심사결과 : 조건부 의결, 심의 보류

- 조건부 의결, 심의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

3. 조치결과

○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전은 관련된 토지소유자,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(통보한 날짜 기재)

○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전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·고시 【계획, 추진 중(진행 상황), 완료】

○ 조건부 의결, 심의 보류, 부결된 안전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

[별지 제4호 서식]

제 2000- 호

위 촉 장

소 속 : 00000000

성 명 : 0 0 0

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
하여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
으로 위촉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고령군수 0 0 0

[별표 1]

산사태 취약지역 등급	점수
1 등급(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)	360점 이상
2 등급(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)	240~360점 미만
3 등급(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)	80~240점미만
4 등급(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)	80점 이하

[별표 2]

토석류 취약지역 등급	점수
1 등급(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)	540점 이상
2 등급(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)	360~540점 미만
3 등급(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)	120~360점미만
4 등급(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)	120점 이하